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18호

「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8월 16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행정안전부 「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」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책무 조항 신설 (안 제2조)
- 나. 연임 제한 규정 조항 신설 (안 제4조2항)
- 다. 학교·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- 라. 포상, 경력 인정 조항 신설 (안 제11조~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

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, FAX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: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:
- 연 락 처:

조 례 안 내 용	의 견 내 용	비 고